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관 계 기 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동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 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8. 9. 7. H기업(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보라매공원 테마 물놀이터 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2019. 4. 30.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287백만원)을 맺어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설공단(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에서 이 건 공사의 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473호, 2015.6.30.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시공자의 기본업무) 제3항 제1호,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1항 제2호, 제7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관리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공자가 2018.9.10. 발주자에게 제출한 ‘현장대리인 신고서’에 따르면 이전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갑’(조정중급기술자)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자는 2018.9.10. 착공시 부터 2018.11.14. 감사당일 까지 신고된 현장대리인(‘갑’)의 현장 이탈 및 변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 없이 이 건 공사의 현장에 신고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장대리인 미배치(상주)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다만 시공자의 소속 직원이며 이 건 공사의 품질관리자로 신고된 ‘을’(조정초급기술자)이 현장대리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그림 1] 공사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현황



▲ 공사안내 표지판



▲ 공사안내 현수막

이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자(‘을’)가 현장대리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기 신고된 현장대리인(‘갑’)은 현장을 이탈하였는데도 시공자의 대표자 및 본인(‘갑’)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또한 발주자에게도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관리관)는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신고된 현장대리인의 현장 이탈(미상주)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2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변경사항 미보고 행위는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대리인 변경에 대한 시정 미조치 행위는 국토교통부 지침 제79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며, 발주자(공사관리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행위는 국토교통부 지침 제12조 제11항 제2호에 위반된 것이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시설과)에서는 신고된 현장대리인(‘갑’)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처리를 진행 중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대리인 교체에 관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며, 2018.11.19. 시공자의 소속 직원인 ‘을’로 교체 조치하였고,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갑’)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이 건 공사의 현장을 이탈(미상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현장대리인(‘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하시고, 현장대리인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자에게 미보고한 시공자(소속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